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기초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동일하게 제77조를 신설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와 같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방계약법에도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 검토 조항이 명문화 됨으로써 지자체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정부, 국회, 제18대 대선후보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포함된 40대 중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대상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편집자 주]



지방계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70호) 개정 주요 내용

- 공포일 : 2014. 11. 24, 시행일 : 2014. 11. 24.
- 분리발주 공사의 범위 명확화 및 활성화(제77조)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
 -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를 검

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p> <p>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p> <p>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u>공사로서</u>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_____ _____ _____</p>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_____ _____</p> <p>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p> <p>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현행 제2항과 같음)</p>